

기획특집

‘TBT 중앙사무국’ 출범, 그 의의

왜 TBT인가?

‘TBT 중앙사무국’이 9월 29일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하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타미 오버비(Tamy Overby) 대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장샤크 그로하(Jean-Jacques Grauhar) 대표 및 경제단체, 수출기업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한-미 FTA 협상이 일단락되고,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언론에 노출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세인들에게는 생경한 용어이다.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제법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관련기업들을 긴장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모두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환경규제를 TBT와는 별개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그 내용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그 시기를 놓쳐서 피해를 보기도 한다.

환경규제에 대해 높은 관심과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이로 인한 기업경쟁력과 특히 무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TBT가 국제교역에 직간접적인 미치는 영향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며, 통상현안의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제통상용어으로써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표준(Standard), 적합성평가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등을 채택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특정 국가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자국의 실정에 따라 나름대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정, 표준에 부합하도록 별도 생산설비를 갖추거나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들이 무역을 제한하는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미애

기술규제대응과 연구관
02-609-7355

중앙사무국의 태동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체제 이후 세계각국은 교역확대를 위해 관세인하협상을 전개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됨에 따라,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s)의 제거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되었다.

1995년 GATT에서 WTO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WTO 협정의 부속서 중의 하나로 TBT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WTO/TBT 협정은 회원국별로 가입하던 GATT/TBT 협정과는 달리 WTO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WTO/TBT 협정은 회원국들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하며,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적용할 것을 규정한다. WTO/TBT 협정에 의해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준비, 제정, 채택 및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히 채택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준과 기술적 내용이 다른 경우로써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규정을 WTO 사무국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WTO/TBT 협정은 예외적으로 국가안보, 기반적 관행방지, 안전,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면 각 회원국은 수출상대국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규정을 채택·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정책달성을 목적으로 환경규제와 같은 다양한 기술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국은 타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WTO/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은 타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3개의 질의처를 운영 중인데 공산품분야는 기술표준원, 농수산품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은 보건복지

각각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통보분 내용 중 약 60%에 해당되는 공산품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은 질의처 역할, 국외 통보분에 대한 보급 및 WTO/TBT 위원회 참석 등의 임무는 물론, FTA 협상에서 TBT 부문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TBT 업무를 선도해 왔다.

한미 FTA 협상 시, TBT 분과위원회에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투명성 원칙에 의거하여 대외창구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 기술표준원에 중앙사무국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되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캐나다, 멕시코, EU와도 동인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2007년 OECD 규제개혁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투명성제고와 무역촉진을 위하여 중앙 WTO 질의처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07년 7월 국무총리실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08년 3월 국무조정실에서는 동 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또한, WTO/TBT 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여타 회원국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이 가능한 중앙웹사이트의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기술표준원에 영문 웹사이트를 설치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통보분의 기술표준원으로 송부토록 하여 통보분과 기술규정에 대한 원문을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여타 회원국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련부처에서는 회원국의 관련자료 요청에 일일이 회신하는 수고도 덜게 되었다.

이렇듯 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TBT 업무의 질적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TBT 중앙사무국으로 단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질의처를 설치한 135개국가 중에서 113개 국가가 단일 질의처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다수가 표

준화기관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연성을 애초에 부여받을 것인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질의치라는 단순 기능과는 달리 중앙사무국의 업무영역은 정책개발, 제도 선진화, 기업지원 등 'TBT'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망라하고 있다. 국내 관련 업무를 중앙사무국이 구심점이 되어 관련부처, 유관기관, 협회, 업체를 아울러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악하여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이에 적기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www.knowTBT.kr)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를 갖추었다. 통보문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한 후 기술포털원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국가별, 지역별, 기간별, 품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1995년 이후 각국의 통보문을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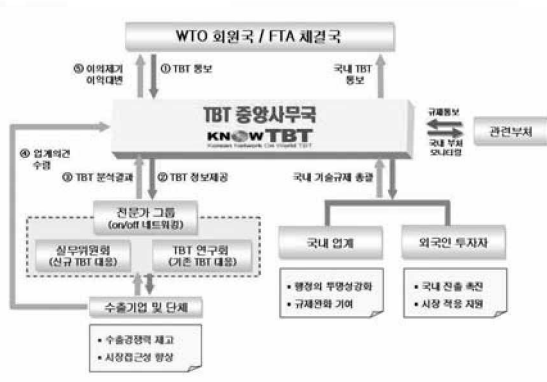
또한, 통보문을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TBT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는 회원들이 동 사이트 가입시 선택한 품목분야의 통보문이 입수되면 즉시 회원의 전자우편으로 자동전달하는 기능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이다.

우리나라 수출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10개분야 170여명의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추가적인 세부자료를 분석하여 관련업체에 미리 대비토록 홍보하고 있다.

통보 내용이 국제통상규범에 벗어나거나 교역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TBT 위원회에서 정식의 제로 세기하거나 양자적 해결을 통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해결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TBT 위원회에서 논의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급하고, 여타 회원국의 기술규제 중 우리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및 시정촉구 등 적극적인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보문 외의 해외기술기세에 대해서도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수출업체에 미치게 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사전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사무국의 역할

중앙사무국의 임무 중에서 WTO 사무국에 통보한 각 회원국의 통보문을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TBT 대응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출상대국의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실체를 정확하게 파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수출현장의 애로를 직접 파악하고, 해결에 이르는 윈스팀 서비스체제를 갖추었다.

WTO/TBT, FTA/TBT 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제정 및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제, 국가간 협정의 준수와 성실한 이행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규제 관행의 투명성 향상과 제도선진화에도 기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무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우리나라의 기술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적응이 수월하도록 할 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TBT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확산, 민간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KN·WTBT (Korean Network On World TBT)라는 브랜드체제를 갖추어 TBT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적 인식제고를 꾀하고자 한다.

특정국가의 무역제한적 조치는 국제채널에서 공론화하거나 공동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찰시킬 수 있다. 합리적인 논리전개와 기술적, 과학적 근거기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이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정부측에 요구하고 국제협상 및 정책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한 사례가 많지 않다.

앞으로 우리 기업은 협회나 정부와 함께 기술장벽 이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업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사무국은 기업이 정부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TBT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앙사무국의 비전

규모가 큰 경제권과의 FTA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12위권 무역규모의 걸맞게 기존 외국의 기술규제를 단순히 전파하는 수동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이해관계자간 협의의 틀 통해 대처방안을 도출하는 능동적 대응으로 우리나라의 TBT 대응역량을 한차원 높여야 할 때이다.

TBT 중앙사무국은 출범하였고 출범 자체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성과를 통하여 국익에 이바지하느냐가 관건이다. 부처간의 조율과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업계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TBT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업계에 제공하는 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보수집치를 다양화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다.

영킨 실타래를 풀어 나가듯이 중앙사무국은 험난한 인들을 헤치고 나아가 명실 공히 중앙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가 하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의 중앙사무국 운영도 세계표준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 기술표준 2008.10